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가단62002 손해행위취소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우
변 론 종 결 2021. 7. 19.
판 결 선 고 2021. 8. 23.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603,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 갑 제16호증, 갑 제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2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이 법원의 C원장, D조합장에 대한 각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B 등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2014. 5. 2.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증금액을 1,26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9. 4. 26., 대출과목을 일반자금대출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F)를 E은행에게 발급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초하여 2014. 5. 2. E은행으로부터 1,40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이 2018. 7. 12. 예금부족을 사유로 부도처리 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고 2018. 9. 17. E은행에게 원금 988,000,000원과 이자 9,729,769원 등 합계 997,729,769원(= 988,000,000원 + 9,729,76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지연손해금율은 연 10%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사고 발생 이후 소외 회사로부터 5,562,26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2018. 9. 17.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소외 회사와 G에 대한 구상금 채권 중 대위변제금 잔액은 992,167,509원(= 997,729,769원 - 5,562,26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고, 확정지연손해금은 1,523원이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1) 소외 회사는 2017. 5. 24.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소외 회사는 2018. 11.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97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11. 27. 접수 제116046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2018. 11. 27.을 기준으로 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

(1) 적극재산

2018. 11. 27. 기준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 내역은 다음 [표1] 기재와 같다.

[표1]

순번	재 산	가액 (원)	적극재산 제외 금액 (원)
1	제주시 H 전 3,436㎡ 및 지상 창고 (별지 제2목록 순번 1 부동산)	2,619,973,100	I은행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 무 합계 3,509,029,504
2	제주시 J 전 1,408㎡ (별지 제2목록 순번 2 부동산)	1,071,488,000	
3	제주시 K 전 880㎡ (별지 제2목록 순번 3 부동산)	669,680,000	
4	제주시 L 과수원 424㎡ (별지 제2목록 순번 4 부동산)	344,288,000	
5	제주시 M 과수원 74㎡ (별지 제2목록 순번 5 부동산)	50,690,000	
6	제주시 N 전 894㎡ (별지 제2목록 순번 6 부동산)	680,334,000	
7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Q호 (별지 제2목록 순번 7 부동산)	286,000,000	
8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R호 (별지 제2목록 순번 8 부동산)	286,000,000	전세권자 전세금 200,000,000
9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S호 (별지 제2목록 순번 9 부동산)	295,000,000	
10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T호 (별지 제2목록 순번 10 부동산)	295,000,000	전세권자 전세금 200,000,000
11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U호 (별지 제2목록 순번 11 부동산)	295,000,000	전세권자 전세금 200,000,000
12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V호 (별지 제2목록 순번 12 부동산)	295,000,000	전세권자 전세금 200,000,000
13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W호 (별지 제2목록 순번 13 부동산)	289,000,000	전세권자 전세금 200,000,000

14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X호	274,000,000	D조합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1,447,500,000
15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Y호 (별지 제1목록 순번 1 부동산)	275,000,000	
16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Z호 (별지 제1목록 순번 2 부동산)	280,000,000	
17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A호 (별지 제1목록 순번 3 부동산)	280,000,000	
18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B호 (별지 제1목록 순번 4 부동산)	274,000,000	
19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C호 (별지 제1목록 순번 5 부동산)	269,000,000	
20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D호 (별지 제1목록 순번 6 부동산)	269,000,000	
21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E호 (별지 제1목록 순번 7 부동산)	269,000,000	
22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F호 (별지 제1목록 순번 8 부동산)	269,000,000	
23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G호 (별지 제1목록 순번 9 부동산)	269,000,000	
24	서귀포시 AH호텔 AI호	240,000,000	
25	서귀포시 AH호텔 AJ호	250,000,000	
26	서귀포시 AH호텔 AK호	137,000,000	
27	서귀포시 AH호텔 AL호	137,000,000	
28	서귀포시 AH호텔 AM호	137,000,000	
29	서귀포시 AH호텔 AN호	145,000,000	
30	서귀포시 AH호텔 AO호	260,000,000	
31	서귀포시 AH호텔 AP호	145,000,000	
32	서귀포시 AH호텔 AQ호	145,000,000	
33	서귀포시 AH호텔 AR호	145,000,000	
34	서귀포시 AH호텔 AS호	172,000,000	
35	서귀포시 AH호텔 AT호	172,000,000	
36	서귀포시 AU호텔 AV호	44,294,090	
37	서귀포시 AU호텔 AW호	37,287,410	
38	서귀포시 AU호텔 AX호	37,287,410	

합계		12,409,322,010	5,956,529,504
적극재산 가액		6,452,792,506 (= 12,409,322,010 - 5,956,529,504)	

(2) 소극재산

2018. 11. 27. 기준 소외 회사의 소극재산 내역은 다음 [표2] 기재와 같다.

[표2]

순 번	채 무	금액 (원)
1	E은행 운전자금	2,596,000,000
2	E은행 신용카드	527,000,000
3	AY 이행지급보증	23,000,000
4	AZ 운용리스	39,000,000
5	BA공제조합 유가증권담보대출	1,832,000,000
6	BA공제조합 이행지급보증	6,394,000,000
7	주택도시보증공사 이행지급보증	722,000,000
8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인채무보증	3,600,000,000
9	D조합 부동산담보대출	1,447,500,000
10	BB 기업일반대출	12,033,470,745
11	BC조합 부동산담보대출	456,000,000
12	원고 사전구상금	1,031,367,000
13	BD유한회사 양수금	2,430,000,000
합 계		33,131,337,745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고, 2018. 11. 27.경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관한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된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D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603,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바이다.

나. 판 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에 대하여 992,169,032원(= 대위변제금 992,167,509원 + 확정지연손해금 1,52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992,167,509원에 대하여 2018.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에 의한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관련 법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책임재산이 되므로 피담보채권액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때에는 그와 같은 부동산의 양도나 그에 대한 새로운 담보권의 설정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새로 설정된 담보권의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앞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고 그에 기한 등기가 말소되었거나 채권자가 선순위 담보권과 후순위 담

보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등기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선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후순위 담보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선순위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을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무액에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3081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살피건대, 2018. 11. 27.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계 2,454,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D조합의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8. 11. 27. 당시 그 피담보채권액이 1,447,500,000원인 사실, 소외 회사가 2018.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 2018. 11. 27. 당시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이 6,452,792,506원이고, 소극재산이 33,131,337,745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조합의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1,447,500,000원)이 2018. 11. 27.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2,454,000,000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표3]

순번	재 산	가액 (원)
1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Y호 (별지 제1목록 순번 1 부동산)	275,000,000
2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Z호 (별지 제1목록 순번 2 부동산)	280,000,000
3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A호 (별지 제1목록 순번 3 부동산)	280,000,000
4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B호 (별지 제1목록 순번 4 부동산)	274,000,000
5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C호 (별지 제1목록 순번 5 부동산)	269,000,000
6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D호 (별지 제1목록 순번 6 부동산)	269,000,000
7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E호 (별지 제1목록 순번 7 부동산)	269,000,000
8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F호 (별지 제1목록 순번 8 부동산)	269,000,000
9	제주시 O에 있는 P건물 AG호 (별지 제1목록 순번 9 부동산)	269,000,000
합계		2,454,000,000

한편,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2018. 7. 1. B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7. 10. 접수 제68937호로 채무자를 G, 채권최고액을 3,600,000,000원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BD 유한회사가 2019. 2. 22.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09583으로 양수금등 청구를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소외 회사가 특정 채권자인 B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1. 5. 12. "소외 회사와 BE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BE 주식회사는 소외 회사에게 별지 제2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¹⁾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2018. 7. 10. 접수 제689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1) BD 유한회사가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사해행위취소를 구한 부분이다.

이행하라. 소외 회사와 BE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7. 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BE 주식회사는 BD 유한회사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²⁾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BE 주식회사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D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여러 물건들에 관하여 경매절차에 진행되어 시세보다 하락된 가격으로 낙찰됨으로써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위 매수 과정에서 소외 회사와 직접 접촉하지 않고 D조합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이르렀기 때문에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1,970,000,000원은 감정평가액의 84% 정도에 이르고, 위 매매대금도 소외 회사의 D조합에 대한 근저당 채무 1,493,324,674원, BE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 채무 470,000,000원, 관리비 6,675,390원의 변제에 사용되었으므로,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이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2)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2297로 소송 계속 중이다.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D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받은 주식회사 BF 소속 감정인 BG이 2018. 11. 23. D조합에게 그 무렵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이 2,34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2018. 11.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97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그 매매대금을 D조합이 관리하는 소외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D조합이 2017. 11. 27. 위 매매대금에서 1,488,002,465원을 자신의 소외 회사에 대한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47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대한 또 다른 공동근저당권자인 BE 주식회사에게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송금하여 주고, 6,675,390원을 관리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5,322,209원을 상환 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2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을 제9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BE 주식회사와 BB 주식회사는 2018. 10. 22. 제주지방법원 BH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과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비롯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8. 10. 29.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발령받았고, 이에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2018. 10. 30.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졌던 점, ②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최초 분양가의 80%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앞에서 본 감정이 2,340,000,000원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낮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매매계약을 주선할 당시 D조합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조차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지 염려하고 있었던 상황

으로 보이므로, 가사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D조합을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자력에 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4)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살피건대, D조합이 2018. 11. 27. 피고가 소외 회사 측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1,447,5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자신의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조합이 2018. 11.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 BE 주식회사가 2018. 11. 27. 피고가 소외 회사 측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중 470,000,000원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자신의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준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장 가까운 2020. 2. 12.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2,051,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D조합의 공동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603,500,000원(= 2,051,000,000원 - 1,447,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1. 27.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603,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60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별지]

제1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J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1층 내지 4층 각 32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Y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2.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K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주민자치실 등)

지1층 318.4㎡

1층 내지 4층 각 32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Z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3.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K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주민자치실 등)

지1층 318.4㎡

1층 내지 4층 각 32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AA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4.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L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주민자치실 등)
지1층 173.3㎡

1층 내지 4층 각 164.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AB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5.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L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주민자치실 등)
지1층 173.3㎡

1층 내지 4층 각 164.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AC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6.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L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주민자치실 등)
지1층 173.3㎡

1층 내지 4층 각 164.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AD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7.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M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내지 4층 각 164.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AE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8.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M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내지 4층 각 164.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AF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9.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M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다세대주택)

1층 내지 4층 각 164.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AG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끝.

[별지]

제2목록

1. 제주시 H 전 3,436㎡
2. 제주시 J 전 1,408㎡
3. 제주시 K 전 880㎡
4. 제주시 L 과수원 424㎡
5. 제주시 M 과수원 74㎡
6. 제주시 N 전 894㎡
7.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N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1층 내지 4층 각 32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3층 Q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8.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O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1층 내지 4층 각 32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R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9.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K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주민자치실 등)
지1층 318.4㎡

1층 내지 4층 각 32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S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10.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K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주민자치실 등)
지1층 318.4㎡

1층 내지 4층 각 32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T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11.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K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주민자치실 등)
지1층 318.4㎡

1층 내지 4층 각 32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U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12.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K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주민자치실 등)
지1층 318.4㎡

1층 내지 4층 각 329.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V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13. (1동의 건물의 표시)

제주시 O [도로명 주소 제주시 BI] P건물 BL동

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슬래브 위 기와지붕 4층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주민자치실 등)
지1층 173.3㎡

1층 내지 4층 각 164.8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W호 철근콘크리트구조 66.118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제주시 O 대 9,904.5㎡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990450000분의 12380625 끝.